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2년간의 이행 현황 및 시사점

김 한 성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김 민 성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mskim411@kiep.go.kr, Tel: 3460-1113)

- | | |
|-------------------------|--------------------------------------|
| 1. 서론 | 3. ASEAN 현지 기업의 한·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
| 2. 한·ASEAN FTA 상품협정 활용률 | 4. 결론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09년 6월 1일로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된 지 2년이 경과됨.
- ▶ 한·ASEAN FTA는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국/지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지닌 ASEAN 회원국의 경우, 일반 대중의 FTA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각국 정부의 FTA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약해 실제로 FTA를 활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 상품협정 이행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활용률 측정을 통해 한·ASEAN FTA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발효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면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발효 1년차인 2007년 6월~2008년 5월 동안의 활용률은 38.0%에 불과하였으나 발효 2년차인 2008년 6월~2009년 5월 동안의 활용률은 49.1%로 10% 이상 증가함.
 - 상대적으로 최근에 FTA가 발효된 라오스와 캄보디아 수입품에 대한 활용률이 10% 미만으로 낮았으며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은 60%를 넘어섬.
- ▶ 반면에 우리나라가 ASEAN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저조함.
 - 자료의 한계로 활용률이 아닌 '실용률' 을 통한 분석만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출에서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 우리나라 수출에서 한·ASEAN FTA 특혜관세 이용이 낮은 데에는 한·ASEAN FTA 자체에 대한 또는 한·ASEAN FTA 활용 방법에 대한 ASEAN 현지 수입업체들의 인지가 낮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 됨.
 - ASEAN 4개국 총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ASEAN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약 68%가 한·ASEAN FTA 체결이나 이용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 ▶ 따라서 향후 한·ASEAN FTA를 통한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ASEAN 현지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ASEAN FTA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정부간 접촉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한·ASEAN FTA 체결을 상대 수입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국내적으로 FTA 이행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협력기구를 마련하여 한·ASEAN FTA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1. 서론

-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담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은 한·ASEAN FTA 투자협정에 서명함으로써 4년여 지속된 양자간 FTA 협상을 마무리함.
-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FTA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시작된 한·ASEAN FTA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가 동시에 추진되는 기존 FTA와는 다르게 각각의 분야에 대한 협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됨.
- 2006년 8월 서명된 한·ASEAN FTA 상품협정은 2007년 6월 1일에 국내 비준절차를 마무리한 ASEAN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발효에 들어감.
- 서비스협정은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비준 후인 2007년 11월에 서명되어 지난 2009년 5월 1일에 발효됨.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ASEAN 5개 회원국과 2007년 6월 1일에 우선적으로 발효된 상품협정은 2009년 5월 31일로 만 2년이 경과됨.
- 이후 필리핀과는 2008년 1월 1일에, 브루나이는 2008년 7월 1일,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각각 2008년 10월 1일과 11월 1일에 협정이 발효됨.
- 태국의 경우, 협상 내용과 국내 문제로 인해 협정 서명이 지연되었으나 2009년 2월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서명하여 현재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임.
- 한·ASEAN FTA는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국/지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지닌 ASEAN 회원국의 경우, 일반 대중의 FTA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각국 정부의 FTA 이행을 위한 인프라가 미약해 실제로 FTA를 활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개발도상국이지만 FTA 경험이 풍부한 칠레나 선진국으로서 투명한 시스템을 지닌 EFTA 국가나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가 기존에 FTA를 체결한 국가와 차이를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2년 동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한·ASEAN FTA 상품협정 활용률

가. 한·ASEAN FTA 발효 후 양자간 상품교역 추이

- 1997~98년 외환위기로 급감한 한·ASEAN 간의 교역은 이후 빠른 회복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함.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ASEAN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내외로 우리나라의 5대 교역국/지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한·ASEAN FTA 발효 후, 한국과 ASEAN 간의 교역은 교역 증감률에서 우리나라 5대 교역국/지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을 기록함(표 1 참고).
- 발효 1년차인 2007년 6월~2008년 5월 동안 우리나라의 대 ASEAN 수출은 24.9% 증가하였고 수입은 21.0% 증가함.
- 수출 증가율에서는 동 기간 우리나라의 여타 주요 교역국/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넘어서는 수치이며, 수입 증가율에서도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EU에 대한 수입 증가율을 넘어서는 수치임.
- 반면에 발효 2년차인 2008년 6월~2009년 5월까지 양자간 교역은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2.7%와 4.3% 감소함.
- 하지만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위축의 결과로 동 기간의 우리나라 대세계 교역이나 중국, 미국, 일본, EU와의 교역량 감소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평가됨.

표 1. 한·ASEAN FTA 발효를 전후한 상품교역 추이

	2006.6~2007.5		2007.6~2008.5		2008.6~2009.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대세계	343,743 (-)	327,860 (-)	402,479 (17.1)	398,148 (21.4)	378,364 (-6.0)	371,465 (-6.7)
중국	74,272 (-)	54,961 (-)	90,219 (21.5)	70,260 (27.8)	81,911 (-9.2)	65,463 (-6.8)
미국	45,096 (-)	35,338 (-)	45,736 (1.4)	38,380 (8.6)	41,724 (-8.8)	32,221 (-16.0)
일본	26,434 (-)	54,183 (-)	27,889 (5.5)	59,600 (10.0)	24,167 (-13.3)	52,571 (-11.8)
EU	51,005 (-)	32,957 (-)	59,794 (17.2)	39,169 (18.8)	51,125 (-14.5)	34,683 (-11.5)
ASEAN	35,327 (-)	31,101 (-)	44,130 (24.9)	37,639 (21.0)	42,920 (-2.7)	36,017 (-4.3)

주 1) () 안의 숫자는 전기대비 증감률.
 2) ASEAN과의 교역량은 아직 협정이 발효하지 않은 태국 및 싱가포르를 포함한 ASEAN 10개 회원국 전부를 대상으로 작성함.
 자료: 무역협회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 따라서 양자간 교역량으로 살펴봤을 때, 한·ASEAN FTA는 우리나라와 ASEAN 간의 교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됨.

- 한·ASEAN FTA 발효가 ASEAN 10개 회원국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품목의 90%에 이르는 일반품목군에 속한 품목의 대한 관세철폐가 2010에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관세인하 및 철폐로 인한 양자간 교역량 증가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나.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 대ASEAN 수입

■ 양자 혹은 다자간에 체결된 FTA가 상품교역에 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수치로 FTA 특혜관세 활용률(utilization rate)을 이용함.

- 특혜관세 활용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 FTA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됨.

$$\text{활용률} = \frac{\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품목}}} \text{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 M_{p,s}}{\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품목}}} \text{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 M_{p,s}} \times 100\%$$

여기서 M은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의미.

- 0~100%로 표시되는 활용률은 100%에 가까울수록 활용 가능한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가 ASEAN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표 2]에 정리됨.¹⁾

- 1년차에 한·ASEAN FTA가 발효된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에서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38.0%로 나타남.²⁾

1)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계산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액’은 (1) 일반품목군에 속한 품목을 대상으로 (2)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품목을 제외하고 (3) 최혜국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또한 (4) 각국이 한국과 FTA를 발효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효 이후의 수입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발효 1년차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7.0%로 나타남. 동 보고서에서는 일반품목만을 대상으로 최빈국특혜관세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활용률에 차이를 보임.

○ 국별로는 5개국 중, 미얀마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활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 1~5월의 5개월에 대한 활용률이 포함된 필리핀이 가장 낮은 수입 활용률을 기록함.

- 발효 2년차인 2008년 6월~2009년 5월까지의 활용률은 ASEAN 10개국 중 8개국을 대상으로 측정되었으며 1년차 활용률에서 10% 이상 증가한 49.1%를 기록함.

○ 역시 미얀마가 87.9%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10월부터 새롭게 FTA가 발효된 라오스 상품에 대한 수입 활용률이 1.2%로 가장 낮음.

표 2. 한·ASEAN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국가별

국가	2007.6~2008.5	2008.6~2009.5
브루나이	-	58.3%
인도네시아	47.3%	63.5%
캄보디아	-	6.3%
라오스	-	1.2%
미얀마	83.0%	87.9%
말레이시아	32.3%	36.8%
필리핀	15.1%	38.2%
베트남	58.6%	66.5%
전체	38.0%	49.1%

주 1) 2007.6~2008.5 기간의 필리핀의 활용률은 발효일을 고려하여 2008.1~2008.5 기간을 포함.
 2) 2008.6~2009.5 기간의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의 활용률은 각각 발효일을 고려하여 2008.7, 2008.10, 2008.11부터의 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산업별 수입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은 [표 3]에 정리됨.

- ASEAN 지역에서 완전생산된 제품이 주를 이루는 1차산품에 대한 활용률은 9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공1차산품의 특혜관세 활용률도 발효 1년차의 79.5%에서 2년차에 95.9%로 높아짐.

- 반면에 기타운송기기와 운송기기, 그리고 전기기계류에 대한 수입은 10% 미만의 낮은 활용률을 기록함.

○ 발효 2차년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총 수입’에서 약 17.2%를 차지하는 전기기계류에 대한 수입활용률은 9.1%로 매우 저조한 활용률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적인 특혜관세 활용률이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됨.

표 3. 한·ASEAN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품목별

산업	2007.6~2008.5	2008.6~2009.5
1차산품	91.5%	98.1%
가공1차산품	79.5%	94.9%
가공광물	45.2%	54.0%
가족제품	32.6%	57.1%
고무/화학	35.8%	51.6%
금속제품	55.2%	65.2%
기타운송기기	4.0%	1.3%
기타제조품	25.4%	33.7%
비금속광물	72.4%	54.0%
운송기기	3.9%	3.0%
의류/직물	65.4%	82.8%
일반기계	7.5%	11.4%
전기기계	4.8%	9.1%
정밀기계	11.7%	16.7%
종이/목재	33.3%	54.1%
총합계	38.0%	49.1%

주: 각각의 기간은 협정 발효일을 기초로 국별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다. 한·ASEAN FTA 특혜관세 실용률: 대ASEAN 수출

■ 우리나라가 대ASEAN 수출에서 한·ASEAN FTA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음.

- 그러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 관세청의 특혜관세 신청 현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ASEAN 국가들과의 자료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활용률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실용률을 이용할 수 있음.³⁾

- 실용률 (Utility Ratio)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된 총 수입액 중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하며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됨.

$$\text{실용률} = \frac{\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품목}}} \text{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 M_{p,s}}{\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품목}}} M_{p,s}} \times 100\%$$

■ 한·ASEAN FTA는 원산지 증명에서 기관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3) 총 수입을 분모로 가지는 실용률은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만을 고려한 활용률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지며, 실용률과 활용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용률은 이행의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됨.

-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자 혹은 대상국의 수입자가 한·ASEAN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나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한·ASEAN FTA 발효 2년 동안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을 제공받아 우리나라 수출에서의 특혜관세 실용률을 추정함.⁴⁾

○ 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물품은 모두 특혜관세를 받은 것으로 가정하면서 우리나라의 ASEAN 국별 수출액을 기준으로 실용률을 계산함.

■ FTA가 발효된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발효 1년차인 2007년 6월~2008년 5월까지의 기간과 발효 2년차인 2008년 6월~2009년 5월 기간 동안의 실용률은 [표 4]에 정리됨.

- 발효 1년차 실용률은 3.9%로 말레이시아 수출에 대한 수출 실용률이 22.9%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및 필리핀에 대한 수출 실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발효 2년차 실용률은 발효 1년차에 비해 약 1.3% 감소한 2.6%를 기록하였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실용률이 그나마 소폭 증가하여 3~4%대 실용률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의 실용률은 여전히 낮게 나타남.⁵⁾

표 4. 한·ASEAN FTA 수입 특혜관세 실용률: 국가별

국가	2007.6~2008.5	2008.6~2009.5
라오스	-	0.0%
말레이시아	22.9%	1.5%
미얀마	0.02%	0.0%
베트남	0.89%	3.2%
브루나이	-	0.0%
인도네시아	1.28%	4.2%
캄보디아	-	0.4%
필리핀	0.03%	0.5%
총합계	3.9%	2.6%

주 1) 2007.6~2008.5 기간의 필리핀 활용률은 발효일을 고려하여 2008.1~2008.5 기간을 포함.

2) 2008.6~2009.5 기간의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의 활용률은 각각 발효일을 고려하여 2008.7, 2008.10, 2008.11부터의 수출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4) 실용률 산정이 실제값이 아닌 '추정'이 되는 이유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이 100%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다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5) 발효 2년차 실용률이 1년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년차 실용률의 경우 통계상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증명서 발급실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2년차 실용률이 낮아졌다기 보다는 1년차 실용률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포함한 1년차 실용률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61~164 참고.

- 산업별로도 1차상품, 가공1차상품, 그리고 종이·목재류 품목의 실용률이 발효 2차 연도에 10%를 넘었고 나머지 품목들의 실용률은 10% 미만을 기록함.
- 특히 정밀기계, 가죽제품, 가공광물 및 기타운송기기류 수출의 수출 실용률은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1차연도의 경우 가공1차상품과 금속제품의 실용률이 각각 10.1%와 30.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산업은 수출증명서 발급실적에서 [각주 5]에서 언급한 데이터 오류 가능성이 나타난 품목으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짐.

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움.

- 이러한 이유에서 한·ASEAN FTA 상품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출에서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는 일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등장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출에서 한·ASEAN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함.
- 이에 제3절에서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ASEAN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 조사 내용을 요약·정리함.

표 5. 한·ASEAN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품목별

	2007.6~2008.5	2008.6~2009.5
1차상품	0.8%	10.6%
가공1차상품	10.1%	10.9%
가공광물	0.01%	0.4%
가죽제품	0.00%	0.2%
고무/화학	0.8%	5.2%
금속제품	30.2%	4.6%
기타운송기기	0.02%	0.0%
기타제조품	0.1%	1.5%
비금속광물	0.8%	2.6%
운송기기	0.5%	1.2%
의류/직물	1.1%	2.3%
일반기계	0.7%	2.8%
전기기계	0.3%	2.0%
정밀기계	0.01%	0.6%
종이/목재	1.1%	13.4%
총합계	3.9%	2.6%

주: 각각의 기간은 협정 발효일을 기초로 국별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수출자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의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을 기초로 저자 작성.

- 실용률과 활용률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수입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출에서 한·ASEAN FTA의 활용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평가됨.
-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ASEAN 지역에서 가공되어 재수출되면서 관세환급이나 보세구역 가공 등 관세 회피가 가능한 경우나 이미 무관세 품목인 경우 혹은 아직까지 상대국의 관세 인하가 시작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 위의 예에 해당되는 경우, 실제 특혜관세 활용률 계산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한 수입액'을 고려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는 수입액임.
- 우리나라가 ASEAN에 수출하는 수출액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수출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표 4]에서 분석된 실용률이 예상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

3. ASEAN 현지 기업의 한·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 우리나라 대ASEAN 수출에서의 FTA 활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ASEAN 현지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400개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⁶⁾
- 교역규모와 한·ASEAN FTA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ASEAN 국가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선별하여, 국가별로 2008년 1월 1일 이후 한국에서 상품을 수입한 적이 있는 현지 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2009년 5월~6월 동안 방문 및 전화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100만 달러 미만이 40.8%, 100만 달러 이상~1,000만 달러 미만이 43.3%로 전체 기업의 8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연평균 수입 규모는 5만 달러 미만이 45.0%로 가장 많았음.
- 주요 수입 품목은 고무·화학제품 17.8%, 전기·전자 완제품 15.8%, 기계류 14.8%, 전기·전자 부품 14.5%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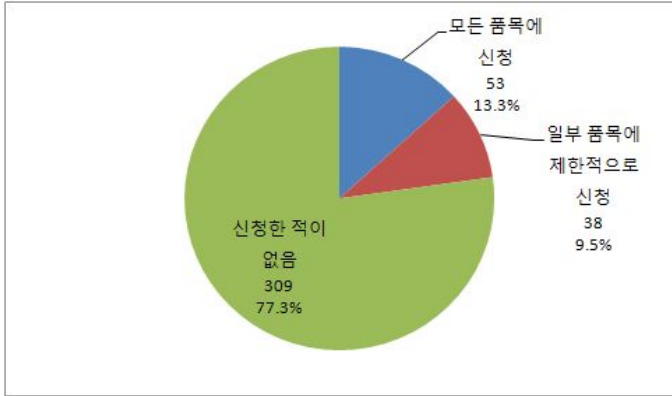
나. 설문조사 결과

- 2008년 1월 1일 이후 한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모든 품목에서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3.3%(53개 기업)에 불과함.

6)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해 수행됨.

- 반면에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는 기업은 309개로 77.3%를 차지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신청하고 응답한 기업은 38개 기업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함.

그림 1. 조사대상 기업의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자료: 『한·ASEAN FTA 활용 현황 보고서』(2009), 한국리서치.

■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ASEAN 현지 기업들에 의한 한·ASEAN FTA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그러나 이러한 낮은 FTA 활용은 한·ASEAN FTA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 기업 중 중국이나 일본과도 교역이 있는 기업 중 ·ASEAN FTA와 일·ASEAN EPA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2.6%, 61.0%로 한·ASEAN FTA 보다는 다소 높지만 여전히 낮은 활용 정도를 보여줌.

■ 한·ASEAN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에게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대부분의 기업은 한·ASEAN FTA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이용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총 309개 대상 기업 중 68.0%에 달하는 210개 기업이 한·ASEAN FTA 체결이나 이용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FTA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수입품이 이미 무관세혜택을 받은 품목이거나 관세회피지역/관세환급 등으로 인해 관세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3개(17.2%)이며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긴 하나 번거로움에 비해 특별한 이점이 없어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기업도 46개(14.9%)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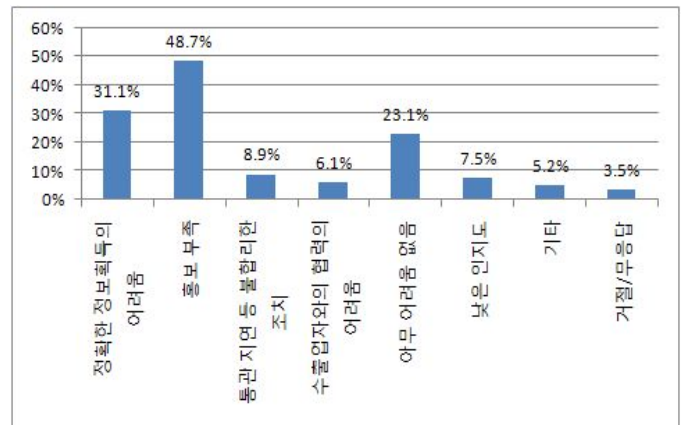
■ 그러나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거나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347개 기업) 중에서 향후 한·ASEAN FTA를 활용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0.5%로 향후 활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임.

- 반면, 아직 생각해 본적 없거나 활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26.8 %와 12.7%를 차지함.

■ 또한 조사대상 기업들은 한·ASEAN FTA를 활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홍보 부족(48.7%)과 정확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31.1%)을 주요 원인으로 꼽음(복수응답 가능).

- 이밖에도 통관지연 등 불합리한 조치나 수출업자와 협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혜관세 신청을 포기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8.9%와 6.1%를 차지함.

그림 2. 한·ASEAN FTA 활용에 따른 어려움(복수응답 가능)



자료: 『한·ASEAN FTA 활용 현황 보고서』(2009), 한국리서치.

■ 설문조사 결과 ASEAN 현지 기업들의 한·ASEAN FTA에 대한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홍보 부족과 정확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ASEAN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지적됨.

- 그러나 설문조사 대상 기업 중 67.8%가 한·ASEAN FTA가 양국간 교역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한·ASEAN FT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또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거나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 향후 한·ASEAN FTA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60.5%로 한·ASEAN FTA에 대한 현지 기업의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4. 결론 및 시사점

■ 수입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ASEAN FTA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면서 10% 이상 급격한 증가를 보임.

- FTA 발효 초기에 FTA에 대한 홍보 부족이나 경험 및 준비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FTA 특혜관세를 활용을 하지 못했던 수입/수출업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FTA를 활용하는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특혜관세 활용률이 상승함.

- 또한 이러한 특혜관세 활용률의 변화는 FTA 발효 2년차에 활용률이 점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일반적인 특혜관세 활용률 변동 패턴과 일치함.

■ 한·ASEAN FTA가 ASEAN 10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발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에서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향후에도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00% 활용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어느 정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활용률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지만 NAFTA의 경우 활용률이 60~70% 정도라고 알려짐.

○ 따라서 수입 활용률이 60~70% 수준에 도달할 경우, FTA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에 FTA가 발효된 ASEAN 국가들과의 이행이 자리를 잡아가고,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양허안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관세혜택의 폭이 커지면서 수입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수출에서의 한·ASEAN FTA 활용은 발효가 2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 실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SEAN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황 조사에서도 한·ASEAN FTA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전체 조사 대상의 77.3%를 차지함.

- 현황 조사에서 FTA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현지수입업자들의 한·ASEAN FTA 자체에 대한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됨.

○ 또한 ASEAN 국가들의 관세 인하·철폐 속도가 한국보다 느리다는 점도 수출 활용률이 낮은 이유가 됨.

■ 따라서 한·ASEAN FTA 이행은 우리나라 수출의 ASEAN 현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간 접촉을 통한 이행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또한 ASEAN 시장에서 한·ASEAN FTA에 대하여 ASEAN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ASEAN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ASEAN FTA 홍보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ASEAN 지역에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ASEAN 현지의 수입기업 간의 접촉에서 한·ASEAN FTA를 활용한 한국 상품 구매를 현지 기업에 홍보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임.

- 그러나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 수입업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나 여타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한·ASEAN FTA를 이용해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이러한 수출기업을 위해 FTA 활용의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FTA를 활용하여(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하는 수출기업에 통관과정이나 수출과 관련한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도입된다면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FTA를 활용하려는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ASEAN 현지 수입업체와의 기업간 접촉에서 한·ASEAN FTA의 활용을 홍보하게 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정부에 한·ASEAN FTA 활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FTA 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한·ASEAN FTA도 FTA의 이행을 담당하는 이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과 ASEAN 간의 FTA 이행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

○ 한·ASEAN FTA 체결과 함께 이행위원회 산하에 관세·원산지 위원회, 경제협력 작업반회의, TBT/SPS 작업반회의 등 세 분과회의가 한·ASEAN FTA의 이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이행위원회는 체결 상대국과의 대외적인 문제를 담

당하는 대외 접촉 채널로서의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분야별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은 미약함.

- 따라서 FTA 이행과 관련한 국내외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FTA 이행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체결된 FTA의 효율적인 운용은 FTA 체결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함.

- 특히 한·ASEAN FTA는 ASEAN 회원국 정부와 기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기준에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됨. **KIEP**